

한우개량사업 시행지침 보완

| 현행 | 개정 | 개정사유 |
|--|---|---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량자료 농가조사 사례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송아지생산 신고시 현지 확인하여 계획 교배로 생산된 송아지임을 확인하여 기초 25천원, 혈통 40천원, 고등 60천원 상당의 사료지급, 송아지(3-4개월)에 자가사육 및 판매의향 신고시 잔액을 현금으로 온라인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량자료 농가조사 사례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송아지생산 신고시 현지 확인하여 계획교배로 생산된 송아지임을 확인하여 기초 25천원, 혈통 40천원, 고등 60천원 상당의 사료지급, 송아지생산 신고후 3-4개월령에 자가사육 및 판매의향 신고시 잔액을 현금으로 온라인 지급 (단, 농가가 일괄수령을 원할 경우 송아지 생산 신고후 2-3개월령에 자가사육 및 판매의향 신고시 사료 또는 현금으로 일괄 지급 가능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축협의 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하여 송아지 생산신고, 자가사육 및 판매의향 조사가 신고된 경우는 일괄지급이 가능토록 개선 |
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도축장 바코드 귀표 출현우 도체성적 조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시행기관 : 농협가축개량사업소 - 협조기관 : 축산물등급판정소 ○ 조사대상 :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, 한우개량 농가 육성사업, 종축등록사업에 참여하여 바코드 귀표가 부착된 도축한우 ○ 수행절차 : 도축장은 조사대상축에 대한 바코드 번호와 도축번호를 『별표 9』에 의하여 조사하여 도축번호가 기재된 바코드 이표와 함께 등급판정소에 제출하고 등급판정소는 등급판정후 가축개량사업소에 조사대상축의 등급판정자료를 『별표10』에 의거 도축장 및 가축개량사업소에 송부(전송)하면 가축개량사업소에서는 전산관리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도축장 바코드 귀표 출현우 도체성적 조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시행기관 : 농협가축개량사업소 - 협조기관 : 축산기술연구소, 시·도(시·군·구), 축산물등급판정소, 농협축산물공판장, 종축개량협회, 축산물종합처리장, 일반도축장 ○ 조사대상 :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,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, 종축등록 및 소전산화사업에 참여하여 바코드 귀표가 부착된 도축한우 ○ 수행절차 : 시·도(시·군·구)는 농협 축산물 공판장(서울공판장, 부천공판장, 고령공판장, 나주공판장) 및 축산물종합처리장(한남 중부, 안성 축산진흥공사, 박달재한우마을)을 바코드 귀표 출현우 조사대상 도축장으로 중점관리하고 일반 도축장은 참여를 계도하고 희망할 경우 한우개량부에서 추가 지정하여 운영 - 현장 후대검정후 검정 수소 도축은 바코드 귀표 출현우 조사대상 도축장으로 출하하여 도축(이하 생략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 전산화사업 귀표 부착우까지 확대하여 도축장의 사업 참여도제고 ○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하던 바코드 귀표 출현우 도체성적 조사사업을 협조가 가능한 농협 축산물공판장과 축산물 종합처리장 및 희망하는 일반 도축장으로 조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화 도모 |